

의안번호	제43호
의결연월일	2018. 7. 26.

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12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7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2018년 7월 26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

### 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세무과장)

#### 1)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 제77조」,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 및 2017년 12월에 배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,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및 방법 등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

#### 2)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을 「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」로 변경

- 나. 납세자보호관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세무부서 외의 부서 중 자치행정과에 배치 함(안 제4조)
- 다. 납세시보호관은 6급,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자로 하되 ,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안전심의, 고충민원의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 부터 제19조까지)
- 마.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)
- 바. 권리보호 요청 처리 기본원칙, 권리보호 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)
- 사. 납세자권리현장 제정, 권리현장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)
- 아.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)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**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 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